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2011. 11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요약

I. 서론

■ 우리나라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은 유럽, 북미, 일본은 물론 신흥국의 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고 실적 또한 부진한 상태에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신흥국 중에서도 전문성이나 코리아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선정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시장은 보험시장 규모나 성장률 면에서 볼 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보험산업의 침체 현상은 아프리카(-11.1%), 오세아니아(-9.6%), 북미(-7.1%)에서 크게 나타남.

○ 반면에 많은 신흥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남미에서는 5.8%, 아시아에서는 2.8%의 실질성장을 기록함.

■ 본 보고서는 아세안 주요 진출대상국의 성장성 평가는 물론이러니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해당국가의 진출 시 해당국에 대한 이해를 도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 진출대상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비해 보험산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knowledge)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

○ 해당국가의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근의 규제 동향은 어떠한지를 병행해서 조사하여 향후 진출 시 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II. 보험시장 분석

1.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가. 현재의 성장성

■ 세계의 2009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40,661억 USD로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1.1% 줄어들었으나 아시아는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23,315억 USD로 전년에 비해 2.0%, 손해보험은 17,345억 USD로 0.1%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요약 표 1> 참조).
- 생명보험은 오세아니아(-19.4%), 아프리카(-15.0%), 북미(-13.5%)에서 침체 현상이 나타난 반면에 남미(5.8%), 유럽(3.5%), 아시아(1.8%)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음.
- 손해보험은 북미(-1.5%)와 유럽(-1.2%)에서 음(-)의 성장을 보인 반면에, 아시아(5.6%), 남미(4.3%), 오세아니아(2.9%)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음.

■ 아세안 주요국 중 인디아(20.3%), 인도네시아(11.9%), 태국(6.3%)의 생명보험이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성장하였음.

- 인디아는 저축성보험의 확대, 인도네시아는 해외합작회사의 시장점유확대와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의 증가, 태국의 경우 수출 지향적 산업정책과 일본·미국의 투자 증대에 힘입은 빠른 경제성장(평균 9.0%)에 기인함.

■ 아세안 주요국 중 베트남(12.7%), 인디아(5.7%), 태국(2.8%)의 손해보험이 최근 5년간 높은 실질성장률을 보였음.

- 베트남 손해보험의 성장은 주로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과 건설 및 기술보험 부문의 성장, 태국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 신상품의 출시, 방카슈랑스 판매의 증가, 인디아의 경우 민영화에 기인함.

<요약 표 1> 아세안 주요국의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 성장률
(단위: 억 USD, %)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보험료 (2009)	실질성장률	보험료 (2009)	실질성장률	보험료 (2009)	실질성장률
한국	574.4	3.0	345.3	10.4	919.6	5.4
인디아	571.1	20.3	79.7	5.7	650.8	18.0
말레이시아	56.8	0.6	31.6	2.4	88.4	1.2
인도네시아	50.6	11.9	22.2	-1.6	72.8	6.3
태국	62.1	6.3	42.3	2.8	104.6	4.7
베트남	6.7	-1.5	7.7	12.7	14.4	4.8

<요약 표 2> 아세안 주요국의 성장배경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인디아	• 1999년 민영보험 허용 • 경제성장 • 저축성보험이 급성장 – 보장성보험, 전문가, 데이터 부족 – 금융위기로 변액보험이 저축성으로 집중	• 1999년 민영보험 허용 • 경제성장
인도네시아	• 해외합작회사 적극적 진입 • 방카슈랑스 허용(2003년)	• 해외투자 적극 유치
태국	• 미국, 일본의 투자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9% • 활발한 상품개발 • 보험료 세제혜택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마스터플랜 추진	• 경제성장 • 신상품 개발 활발 • 방카슈랑스 확대 • 자동차 산업 발전
베트남	n. a.	• 경제개방으로 교역 규모 확대 • 방카슈랑스 확대 • 자동차 산업 발전

나. 잠재성장성

■ 인구와 국토 면적, 그리고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인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잠재시장 성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인디아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7.2%, 도로포장률은 47.0%, 인도네시아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11.1%, 도로포장률은 55.0%에 불과해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보험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의 기업환경이 우리나라의 15위에 훨씬 못 미치는 135위와 115위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나라들은 특정 전략지역 혹은 언어권을 중심으로 시장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태국은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각각 1.5배, 1.8배가량 크고 GDP도 우리나라의 35% 수준이므로 잠재성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20.0%, 도로포장률은 99.0% 정도로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어 보험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환경지수는 16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진입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국토 면적이 커서 잠재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GDP가 우리나라의 10.4% 수준에 불과하여 보험산업의 잠재성장성은 높다고 할 수 없음.

○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21% 정도로 이 지표로 볼 때 상호교류가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환경지수는 88위에 머무르고 있어 기업환경개선의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는 인구와 GDP 기준으로 볼 때 잠재성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55.7%, 도로포장률은 78.0% 정도로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환경지수는 23위로 양호한 편임.

<요약 표 3> 2009년 아세안 주요국의 인구, 면적, GDP, 기업환경지수

지역/국가	인구(백만 명)	면적(km ²)	GDP(USD, bn)	기업환경지수
한국	48.7	221,336	882	15
인디아	1,198.0	3,287,590	1,255	135
말레이시아	27.5	329,750	199	23
인도네시아	230.0	1,919,440	541	115
태국	67.8	514,000	264	16
베트남	88.1	329,560	92	88

자료: 1) Swiss Re(2010), Sigma No. 3/2010.

2) World Bank(2010), 「Doing Business 2010」.

■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의 보험밀도는 인디아(30.2%), 인도네시아(25.4%), 태국(13.8%), 베트남(10.0%)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여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침투도는 인디아(18.7%), 인도네시아(6.3%), 태국(5.2%)이 양(+)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손해보험밀도 증가율은 태국(18.3%), 베트남(16.6%), 인도네시아(13.0%), 인디아(11.4%)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음.

○ 손해보험침투도 증가율은 베트남(4.6%)이 우리나라(6.3%)와 함께 양(+)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다른 나라들은 음(-)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요약 표 4> 보험밀도 및 침투도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밀도(USD)	침투도(%)	밀도(USD)	침투도(%)	밀도(USD)	침투도(%)
한국	0.1	-3.3	9.8	6.3	3.1	-0.3
인디아	30.2	18.7	11.4	-0.4	26.7	15.4
말레이시아	4.1	-3.3	4.1	-3.4	4.1	-3.9
인도네시아	25.4	6.3	13.0	-12.3	16.1	-1.5
태국	13.8	5.2	18.3	-0.3	11.7	2.8
베트남	10.0	-7.5	18.6	4.6	12.7	-0.2

주: 1) 밀도=수입보험료/총인구, 침투도=수입보험료/GDP.

2) 괄호 안은 증가율이고, 평균은 증가율의 평균임.

자료: Swiss Re, Sigma, 각 연도.

2. 성장성 프로파일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요 특징
인디아	- 진입매력도: 상 - 규모 급성장 - 높은 잠재성 - 국영보험 대비 MS 확대 - 높은 외국기업 자산규모 증가율 - 경쟁도 증가 추세	- 진입매력도: 중 - 규모성장세 주춤 - 낮은 잠재성 - 국영보험 종목별 분리과정에서 마찰 - 경쟁도 증가 추세	- 다양한 문화와 언어 - 낮은 기업환경지수 등급 - 전문가, 통계 부족 - 외국사 투자제한: 26%
말레이시아	- 진입매력도: 하 - 낮은 규모성장세 - 낮은 잠재성장성 - 시장경쟁도 강화	- 진입매력도: 중 - 낮은 성장세 - 낮은 잠재성장성 - 시장경쟁도 하강	- 다양한 인종과 종교 - 세제 혜택 - 외국사 투자제한 완화: 70% -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인도네시아	- 진입매력도: 상 - 높은 규모성장세 - 높은 잠재성장성 - 높은 해외합작회사 자산규모 증가율 - 해외합작회사가 주도	- 진입매력도: 하 - 규모성장세 하락 - 낮은 잠재성장성 - 생명보험보다 자산비중 감소 - 국내회사가 주도	- 외국기업의 생명보험에 대한 활발한 투자 - 외국기업은 보험사와 합작 형태만 가능 - 외국기업의 지분한도: 80%
태국	- 진입매력도: 상 - 미국, 일본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률: 9% - 활발한 상품개발 - 보험료 세제혜택 - 보험마스터플랜 추진	- 진입매력도: 상 - 경제성장 - 신상품 개발 활발 - 자동차 산업 발전	-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적 - 해외기업의 지분소유 한도: 25%에서 49%로 확대 - 방기슈랑스 확대
베트남	- 진입매력도: 중 - 규모성장세 변동 심함 - 생명보험 저변 확대 - 경제에서 비중 감소	- 진입매력도: 상 - 높은 규모성장세 - 높은 잠재력	-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장 - 비합작 외국기업 진입 가능 -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III.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요 특징
인디아	• 1개의 국영생명보험 • 22개의 회사 중 20개가 해외 합작회사 • 인디아 회사는 은행, 자동차, 자산관리, 상호펀드, 증권업, 철강, 화학, 통신 등 다양한 업종 회사가 보험에 진출 • 은행의 보험영업 조건이 까다로움	• 6개의 국영손해보험사 • 18개의 회사 중 17개가 해외 합작회사 • 인디아의 다양한 업종 회사가 보험산업에 진출	• 1999년 민영보험사 허용 • 모두 주식회사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 외국기업의 투자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투자한도 완화를 추진 중
말레이시아	• 8개 외국사 • 미쓰이, 프루덴셜, AIG, AmLife 등이 진출	• 15개 외국사 • 일본계회사가 3개사 • 미국계회사가 3개사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 해외회사의 투자제한 완화에 따라 진입증가 추세 • 재보험사도 해외합작 회사 형태로 진입 • Swiss Re는 재타카폴 진입
인도네시아	• 45개사 중 18개사가 해외합작사 • 해외합작사가 50.1% 시장 점유	• 5개사 • 일본계가 2개사	• 글로벌 보험사가 진출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태국	• 24개사 중 13개사가 해외합작사 • 10위 내 해외합작사가 7개	• 5개 해외보험사 지점 • 13개 해외합작회사 • 25개 해외기업 간접 참여	• 해외기업유치에 적극적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베트남	• 삼성생명, 대한생명 (현지법인) • 해외합작사가 우세 • 100% 해외지분사가 9개사	• 삼성화재(현지법인), LIG, 현대해상이 진출 • 내국사가 우세	• 민영화 추세 • 100% 해외기업의 투자 허용 • 서울보증보험이 진출

IV. 보험규제 현황

1. 인디아

■ 감독은 영국의 「보통법」, 1950년 「헌법」, 1999년 「보험감독원법」에 근거함.

○ 보험감독원

- 재무부 산하, 조세와 수수료, 80여명 직원
- 인가, 가입자 보호, 보험중개인 관리, 보험전문기관 관리, 재무건전성 규제

○ 보험정보원

- 보험감독원의 업무를 지원
- 계약자 보호와 보험사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

○ 의료보험감독부서

- 보험감독원의 별도의 부서
- 2010년 현재 자율규제기구 형태로 독립을 논의 중

○ 퇴직연금감독원

- 2003년 「재무부장관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
- 2005년 「퇴직연금감독원법」을 의회에 제출
- 데이터 관리, 퇴직연금운영자 관리, 건전성 기준, 투자 기준, 연금펀드 매니저 기준, 가입자 보호

■ 면허

○ 주식회사만 허용

- 생·손보, 의료보험이 별도의 면허 필요
- 지주회사는 생·손보, 의료보험 포함 가능

■ 재무건전성

- 원수사 최소요구 자본량: USD 22M, 재보사 USD 44M
- 정부소유 생보공단(LIC): USD 1.1M에서 USD 22M로 개정 추진 중
- 사업비율 제한: 규정은 19.5%를 초과할 수 없음.
 - 그러나 대부분 20%를 초과하고 있어 완화를 요청 중
 - 제재규정 없으나 규정준수를 권고
- 솔벤시 마진
 -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의 가치
 - 요구 솔벤시 마진율: 1.5%

■ 투자

- 보험사의 투자를 제한
 - 공채: 25% 이상
 - 공채 혹은 승인유가증권: 50% 이상
 - 승인된 투자 그리고 다른 투자: 35%를 넘지 못함.
 - 기간산업투자: 15% 이상

■ 소비자보호

- 상품
 - 소비자 혼동 최소화: 보장범위, 보장조건 등을 명시적으로 설명
 - 불만구제절차에 대해서 증권에 명시(옴부즈만, 관할법원 등)
- 보험감독원 중재
 - 보험감독원은 중재의 권한을 가짐.
 - USD 44,004 이하 분쟁은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해결
- 옴부즈만
 - 1998년에 소비자 불만 신속처리 위해 정부가 설립
 - 옴부즈만은 조정, 지급판정의 권한을 가짐.

- 보험사에 구속력, 소비자는 선택
- 활성화 추세에 있음.

■ 영업규제

○ 보험료 납부 방법

- 인터넷, 전산이체, 자동이체, 은행환어음 등 다양함.
- 보험료 수령 뒤부터 보장 개시
- 납부기간 지연에 대한 그레이스 기간은 관행상 30일

○ 독립대리점 및 회사대리점

- 자격요건 강화 추세
- 생·손보 겸영대리점 허용: 신청서는 보험감독원 홈페이지, 수수료는 250루피
- 독립대리점: 시험통과, 교육이수(독립대리점 100시간, 겸영대리점 150시간)
- 회사대리점: 허용지침 빈번히 변경되고 있고, 은행과 대부업체에 허용
- 중개인의 대리점 이동은 제한적: 이동 시 보험사로부터 비반대증명서를 획득해야 하고, 한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중개사

- 보수를 목적으로 계약자편에서 보험사와 계약 체결
- 생·손보, 재보 각각 면허 취득
- 자본납입: 원수 중개사(5,000,000루피), 재보험 중개사(20,000,000루피), 겸영 중개사(25,000,000루피)

■ 광고 및 공시

- 모든 매체 광고 허용
- 재무제표, 구체적 재정상태 공시해야 함.
- 감사결과와 공시내용 다를 경우 해명을 의무화함.

■ 외국인규제

- 외국인 투자한도를 26%로 규제하고 있으나, 2010년 현재 49%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
- 외국인 지점을 불허하고, 합작만이 가능
- 기타규제는 내국사와 동일하나 계약자의 펀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음.

■ 특별계정

- 변액보험 가입자 보호 강화 추세
- 수수료 한도: 총수익과 순수익 차이가 크지 않도록 규제
- 고착화전략(lock-in period)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모든 변액상품은 사망보장을 의무화
- 대출을 금지함.

■ 조세

- 위험보험료의 10.3%(서비스세 10%, 교육세 0.3%)를 보험사에 부과
- 서비스세 예외: 자영여성에 대한 상해보험
- 법인세: 소득의 30%, 외국사는 40%, 법인세의 3%를 교육세로 납부
- 총소득이 USD 220,022 이상인 경우 내국사는 7.5%, 외국사는 2.5%의 추가적인 조세 부과

2. 태국

■ 주요 법률로는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법들이 존재함.

- 「민상법」, 「보험산업규제·개선위원회법」, 「예금자보호기구법」,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호법」, 「생산물배상책임법」, 「적립기금법」, 「증권거래법」 등
- 생명보험은 금융투자업이나 금융업의 일부를 겸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법」이나 「금융기관법」 등의 적용을 받기도 함.

■ 금융감독체계는 분야별 감독기관(모두 재무부 산하기관)을 별도로 설치함.

- 은행업: 중앙은행인 태국은행(BOT: Bank of Thailand)
- 금융투자업: 증권거래위원회(SEC)
- 보험업: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 보험산업은 보험위원회(OIC)의 창설과 더불어 일련의 개혁을 추진함.

- 태국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확대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 25% → 49%, 외국인 이사의 수: 25% → 50%)
- 2008년부터 5년 이내에 모든 보험회사의 상장 의무화
- 기업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허가 절차 간소화

■ 면허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재보험업의 3가지로 구분
- 1992년 「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생·손보 겸영 금지
- 태국 내에서의 재보험인수에 대해서는 면허 불필요
- 개인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인수

■ 재무건전성

- 자본 및 지급능력 요건과 상장요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월말보고서의 보고를 의무화
- 신설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상향 조정
- RBC 제도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예금자보호

- 은행은 예금보호기금,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발전기금, 보험회사는 생명/손해보험기금을 운용
- 보험기금의 재원은 주로 보험회사의 분담금(생보 0.5%, 손보 1% 범위 내)

■ 광고 및 공시

-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자본현황표, 주요 금융지표 등
-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의 비율 등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계약에 관한 정보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보험산업은 계리적인 데이터와 인문사회적인 정보가 많이 요구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과 해외 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 주요국에 비교해서 유·무형자산 소유(Ownership)의 우위(Advantage)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 역량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보험료 및 자산 규모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유의 우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보험산업은 수출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직접투자에 의해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를 확보하면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므로 각국의 진입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어느 형태의 직접투자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진출대상국 내의 외국보험회사의 특징과 투자형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직접투자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국가마다 외국회사의 자국투자에 대해서 각각 다른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 보험영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제 내용을 조사하였음.

- 각국은 소비자보호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었고,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었음.
- 세제혜택을 준다는가, 투자지분한도를 완화한다는가 하는 정책들을 통해 해외기업의 자국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 향후 과제

■ 진출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위해서 규제, 정치, 역사, 문화, 종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함.

■ 보험산업은 상품개발에 필요한 계리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개척의 선결 조건이므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할 것임.

■ 아세안 리스크의 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아세안 리스크에는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 사업 리스크(Business Risk), 구조적 리스크(Structural Risk) 등이 있을 수 있음.